

수매.비축농수산물판매허가신청서				처리기간	
				20일	
신청자	성명		사업지원구분		
	대표자		주민등록번호		
	주소		전화		
판매계획	사업명		자금지원일자		
	자금지원액		재고량		
	수매비축품목		판매계획량		
	수매비축량		판매단가		
	원료사용량		판매기간		
	월평균사용량		판매방법		
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공원료용으로 수매.비축한 농수산물의 판매허가를 신청합니다.					
년 월 일					
신청자 (서명 또는 인)					
시장·군수 귀하					
구비서류:판매사유 및 판매계획서 1부				수수료	
				없음	

27273-04511 민

210mm×297mm

'93.8.31. 승인

(신문용지 54g/m²)

※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:생략

⊙농림수산부령 제1189호(1995.6.2)

[뒷면중 "도지사"를 "광역시장·도지사"로 한다.]